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이번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로서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9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0000호, '00.00.00)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¹⁾**(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 프로그램등록부 원본
- ⑧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⑩ 계약신청 상품의 GS인증서 또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서(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서, 신속확인서)와 각 인증의 시험성적서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단, 정보보호제품의 사전인증 요건이 검증필 암호모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모듈인증과 시험성적서 함께 제출)

가. GS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나. CC인증서와 인증보고서

다. 보안기능확인서와 시험결과요약서

라. 성능평가서(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제품에 한함)와 성능평가결과서, 국가용보안 요구사항 준수 제품개요서

마. 신속확인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3 호 서식에 따라 작성(*협상품목 승인 순번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품구성 및 납품형태, 설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
예) CD 00매, 용량 00기가, 매뉴얼 00권 등
- 시험성적서는 계약신청 상품의 제품명별로 제출
- 추가선택품목으로 유지관리상품 또는 커스터마이징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협상품목승인요청 시 별지 3-1호 또는 별지 3-2호 서식에 따른 규격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

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교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② 가격 총괄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²⁾

2)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 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을 명확하게 작성
-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 제출서류 : 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 , 팩스 :
- ② 2차 제출서류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 , 팩스 :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㉔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㉕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㉖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㉗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㉘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디지털서비스물 운영관련 유의사항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물 또는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

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 0000-00호, '00.00.00)
 - ②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0000호, '00.00.00.)
 - ③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 ⑤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 ⑥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0000-00호, '00.00.00)
 - ⑦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⑧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구매총괄과- 호, '00.00.00.)
 -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 고시 제0000- 호, '00.00.00.)
 -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 호, '00.00.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③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0000과(070-4056-000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 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팩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다수공급자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순번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상세 내용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